

제26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12.10.)

조례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 | | |
|---|---|----|
| 1 |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1 |
| 2 |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
| 3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8 |
| 4 |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4 |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1. 30. 권순모 의원 등 11명
- 나. 회부일자 : 2021. 11. 30.
- 다. 상정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순모 의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거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나.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다. 협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해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 마.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대해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 바. 운영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안 제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거창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3조~제4조에서 협의회 구성, 설치 및 기능
 - 안 제5조~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안 제7조~제8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 안 제9조에서 운영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함
-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 과제를 발굴하는 등 거창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거창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해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1. 지속가능발전 방향 및 정책의 제안·자문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교통과장,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환경, 경제, 보건, 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있는 사람
2.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등) ①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분과위원

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 다. 상정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농업인의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설건축물에 농막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에 위임근거 법령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법제처의 일반적인 위원회 입법례에 따라 위원회 조문 순서를 변경함
(안 제4조~제10조)
- 다. 「건축법」 등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용어 변경, 삭제조항을 정비함
(안 제4조·제21조·제28조의2·제41조의2)
- 라. 법령 중복·재기재 등 삭제(안 제11조·제17조)
- 마. 가설건축물에 농막을 추가함(안 제26조제2항제6호)

바. 건축물의 정기점검·긴급점검 정비(안 제32조제1항·제2항)

- 위임근거 변경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수시점검 ⇒ 긴급점검

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2)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반영(안 제4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에 농막을 추가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의 근거법령과 점검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특례를 반영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목적에 위임근거 규정 추가
 - 안 제4조~제10조에서 위원회 조문순서 변경
 - 안 제4조·제21조·제28조의2·제41조의2에서 조문·용어변경등 정비
 - 안 제11조·제17조에서 법령 중복·재기재 등 삭제
 - 안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가설건축물에 농막추가
 - 안 제32조제1항·제2항에서 건축물의 정기점검·긴급점검 정비
 - 안 제46조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를 반영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기존 제4조)제1항 중 “공무원”을 “군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 이내로”를 “3년으로”로 한다.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하며 제4조(기존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2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기존 제7조) 제6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의2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기존 제7조의2)제3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제7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제7호·제8호”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6조로 하며,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보존)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2 조 제목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준용
2. 상주감리: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준용

제29조제3항 중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거창지역건축사회”를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지역건축사회”로 “득하여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32조 조 제목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건축물의 정기점검·긴급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왼쪽굽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8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제4항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를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으로 “구역”을 “구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란” 건축물의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를 말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u>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u>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p>제3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u>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u> ②·③ (생략) ④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 <p>제5조(구성 및 임기) ① <u>군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
|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③ (생략)</p> | <p>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③ (현행과 같음)</p> |
| <p>제6조(기능) ① <u>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u></p> <p>1.~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p> | <p>제4조(기능) ①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u></p> <p>1. <u>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2호는 제외한다)</u> 2.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3. <u>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u> <u>가~다.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p> |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1.~2. (생략)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7조(회의) ①~⑤ (생략)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략)

<신설>

제7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제7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③ (생략)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생략)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8조(회의)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제7호·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현행과 같음)

<삭제>

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사항과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전통문화 보존지역안의 건축물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4호 따른 도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 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설치면적 : 100분의 85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및 1·2층 근린생활시설에 한정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보존)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삭 제>

제21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및 제1종제2층 근린생활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 설>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4. 법 제27조와 영 제20조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

제28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4. 법 제27조와 영 제20조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

제28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⑤ (생략)

제2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② (생략)

③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거창지역건축사회(이하 “거창건축사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지정·통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준용

2. 상주감리: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준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지역건축사회(이하 “거창건축사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건축물의 정기점검·긴급점검)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왼쪽굽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제33조(건축지도원) ①~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공용주차장 및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
3. 건축협정 이행계획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8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건축지도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공용주차장 및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
3. 건축협정 이행계획
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6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란” 건축물의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4배”를 말한다.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제31조 관련)

|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합계 | 검사대행에 드는 시간 | |
|----------------------|-------------|-------------|
| | 현행 | 개정안 |
| 330제곱미터 미만 | <u>2시간</u> | <u>4시간</u> |
| 33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u>3시간</u> | <u>5시간</u>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u>4시간</u> | <u>6시간</u> |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u>5시간</u> | <u>8시간</u> |
| 1만제곱미터 이상 | <u>6시간</u> | <u>10시간</u> |

비고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위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에 드는 시간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기술사 1명의 시간당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
2. 수수료 지급 기준(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 가.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산출금액의 20퍼센트
 - 나.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산출금액의 100퍼센트
 - 다.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산출금액의 50퍼센트(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
 - 라. 동별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산출금액의 50퍼센트(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 다. 상정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거창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근거를 둠(안 제3조제1항)
- 다. 법령 등 중복·재기재 및 위배 사항 삭제(안 제5조·제6조, 제19조~제21조, 제25조~제33조)
 - 조례 재기재: 수당, 위탁 시 의회 동의

- 법령 재기재: 위탁자에 대한 경비지원, 시설 설치 및 변경, 사업 연도,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권리양도의 제한, 시설변경 금지, 시설반환, 보고 및 검사, 지도·감독 등, 준용, 시행규칙
- 법령위배: 위탁의 취소, 휴·폐업의 허가, 운영주체에게 모든 책임 전가, 업무 대행

라. 법령 근거 인용법령 명시(안 제15조)

- 내용: 운영의 위탁, 이용료
- 근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의 기준 충족을 위해 위탁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명시(안 제1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나 법령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항을 재기재한 내용의 삭제와 법령 위배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위탁운영의 근거를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의 기준 충족을 위해 위탁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화
 - 안 제3조제1항에서 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근거
 - 안 제5조·제6조, 제19조~제21조, 제25조~제33조에서 법령, 조례 재기재, 법령위배 삭제
 - 안 제15조에서 운영의 위탁, 이용료 인용법령 명시
 - 안 제18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의 기준충족을 위해 위탁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명시함

-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센터 운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

제5조·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앞의 “제2장 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삭제한다.

제7조 조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운영주체”를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창군의회 의장이”를 “거창군의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의 “제3장 유통센터 위탁”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주체”를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조 제목 “(운영주체 선정)”을 “(수탁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본문(중전 제1항) 중 “때”를 “경우”로 “운영주체”를 “수탁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다.

1.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의무 및 보고
5. 군수의 관리·감독
6. 계약해지 사유
7.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제20조·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앞의 “제4장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 중 “운영주체”를 “수탁자”로 한다.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5장(제33조 및 제34조)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한 적용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탁협약 시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정안 |
|--|--|
| <p><u>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u></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점산지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수집·선별·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p><u>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u></p> <p><삭 제></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생산자단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 현 행 | 개정안 |
|--|--|
| <p>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에 둔다.</p> | <p>제3조(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72 일원에 둔다.</p> |
| <p>제5조(설치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 <p><삭 제></p> |
| <p>제6조(시설 설치 및 변경) 군수는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 <p><삭 제></p> |
| <p>제2장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유통센터</p> | <p><삭 제></p> |

| 현 행 | 개정안 |
|---|---|
| <p>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u>운영주체</u>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p> <p>2.~4. (생략)</p> <p>제8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u>자로</u> 한다.</p> <p>1. <u>거창군의회 의장이</u> 추천하는 의원 1명 2. (생략) 3. 함양·합천군수가 추천하는 <u>자</u>(3명 이내에 <u>한한다</u>) 4. (생략)</p> <p>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 <p>제7조(유통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u>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자</u>(이하 “<u>수탁자</u>”라 한다)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p> <p>2.~4. (현행과 같음)</p> <p>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u>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u>사람으로</u>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p> <p>1. <u>거창군의회에서</u> 추천하는 의원 1명 2. (현행과 같음) 3. 함양·합천군수가 추천하는 <u>사람</u>(3명 이내에 <u>한정한다</u>) 4.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한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삭 제></p> |

| 현 행 | 개정안 |
|--|---|
| <p>제3장 유통센터 위탁</p> <p>제1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 4. 제1호의 생산자단체, 제2호의 법인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p>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p> <p>③ 유통센터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p> <p>제16조(위탁신청) ① 군수가 유통센터의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적인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6. (생략)</p> | <p><삭 제></p> <p>제15조(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 용료)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16조(위탁신청) ① 군수가 유통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적인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6. (현행과 같음)</p> |

| 현 행 | 개정안 |
|---|--|
| <p><u>제17조(운영주체 선정) ①</u> 군수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 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u>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u></p> <p><u>②</u>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u>의 동의</u>를 받아야 한다.</p> | <p><u>제17조(수탁자 선정)</u> 군수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u>수탁자를 선정</u>하여야 한다.</p> <p><u><삭 제></u></p> |
| <p><u>제18조(위탁협약 및 지정) ①</u>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 <p><u>제18조(위탁협약 및 지정) ①</u>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탁내용</u> 2. <u>위탁기간</u> 3. <u>위탁료</u> 4. <u>수탁자의 의무 및 보고</u> 5. <u>군수의 관리·감독</u> 6. <u>계약해지 사유</u> 7. <u>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u> 8.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② (현행과 같음)</p> |
| <p><u>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u>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15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u> 2. <u>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u> 3. <u>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u> | <p><u><삭 제></u></p> |

| 현 행 | 개정안 |
|---|---|
| <p>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한 경우</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운영주체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제20조(이용료)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② 운영주체는 매년 12월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4장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p> <p>제21조(사업연도) 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거창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22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생략)</p> <p>제23조(운영방법)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거창군·함양군·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표준화·기계</p> |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22조(장부비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운영방법) ①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거창군·함양군·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농산물의 표준화·기계</p> |

| 현 행 | 개정안 |
|---|--|
| <p>화·규격화·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u>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24조(취급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못한다.</u></p> <p><u>제25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토지, 건물, 기계, 물류기기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u></p> <p><u>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설비의 설치, 보수장비의 유지, 개·보수,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시설물 및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u>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u></p> | <p>화·규격화·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u>수탁자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24조(취급물품의 제한) 수탁자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못한다.</u></p> <p><u><삭 제></u></p> |

| 현 행 | 개정안 |
|--|--|
| <p>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p> <p>제26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p> <p>제27조(시설변경 금지) 운영주체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28조(시설반환) 운영주체는 위탁기간의 만료, 위탁의 취소,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p> <p>제29조(휴·폐업 허가) ① 운영주체가 휴업을 하려는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

| 현 행 | 개정안 |
|---|--|
| <p>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가 폐업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0조(업무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원물 확보, 마케팅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운영주체는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 실적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32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p> |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

| 현 행 | 개정안 |
|---|--|
| <p>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2. 구매·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p> <p>3.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p> <p><u>제5장 보칙</u></p> <p><u>제33조(준용)</u>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유통센터의 위탁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p> <p><u>제34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 다. 상정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건강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군에서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공공급식 지원계획, 지원 근거·대상 등을 정함(안 제5조~제8조)
 - 현물 지원 원칙: 우수농산물⇒지역농산물⇒타지역 우수농산물 순
 - 학교급식, 단체급식 대상
 - 급식시설 설치 비용 등 지원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라.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을 정함(안 제11조)

마.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12조~제1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지역 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의 지원 계획과 지원근거, 대상을 정하고 먹거리지원센터 설치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공급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제4조에서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
 - 안 제5조~제8조에서 공공급식 지원계획, 지원 근거·대상 등
 - 안 제9조~제10조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안 제11조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 안 제12조~제17조에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정함
- 지역농산물의 유통기반 마련과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으로 군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거창군 지역 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 단체급식과 학교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3. “지역농산물”이란 군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이력추적이 가능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등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5. 지역농산물등의 홍보 및 교육
6.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등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연구
7.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급식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군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급식 지원대상)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학교급식 대상(다만, 같은 조 제1호 단서는 제외한다)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급식 대상

제8조(급식시설 지원 등) 군수는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급식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관리
4. 지역농산물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군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원센터의 운영(부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및 수탁자 선정 등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규모 결정, 급식시설 지원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 업무 관련 과장
2. 공공급식이나 지역농산물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